

NEWSLETTER 817

Apr 14, 20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 미제공시 처분범위 명확화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범위 명확화

II. 주요 개정내용

1.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변경에 따른 조치 (안 별표 9, 별표 10)

-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재수입시 부적합 처분 범위 명확화
 -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 제조일자, **제품명**이 같은 제품에 한해 부적합 처분토록 범위 명확화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되는 수입주류의 제품명 인정 범위 명확화

2. 유통이력 추적관리 등록취소 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11)

-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품목에 대해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기준
 - : (개정 전) 등록취소 → (개정 후) **해당품목** 등록취소
- 품목별로 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정보 미제공시의 처분(등록취소) 범위를 ‘해당품목’으로 한정함.

3. 행정처분 위반근거 법령 정비 (안 별표 13)

-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정비

【 현 행 】	▶	【 개 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 제29조• 시설개선 명령 :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 제27조• 시설개선 명령 : 제28조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 까지

2. 제출방법

- 온라인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문의처: 043-719-2168
- 팩스: 043-719-215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제개정 이유

I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김혜원 관세사

T 070-4353-1596
E h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